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입어”를 “입어(入漁)”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수”를 “정수(定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사망하였”을 “사망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폐선되거”를 “폐선(廢船)되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사망하였”을 “사망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 :”을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1)나) 및 같은 목 2)라) 중 “이수하였다”를 각각 “이수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시”를 “제출 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각각 “경우만 해당한다”로, 같은 항 중 “송부하여”를 “보내”로, “송부

해야”를 “보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받으려는 경우에는”을 “받으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호의 기재사항”을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산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으려는 경우에는”을 “받으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 때에는”을 “했거나 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61조제1항제3호,”를 “법 제61조제1항제3호 및”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으려는 경우에는”을 “받으려면”으로, 같은 항 및 제5항 중 “신청하여야”를 각각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개시일”을 “시작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아니하였”을 “않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조하여야”를 “대조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멸실된”을 “멸실(滅失)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예하여야”를 각각 “유예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락대금”을 “경락대금(競落代金)”으로, “유예하여야”를 “유예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락인”을 “경락인(競落人)”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유예하여야”를 각각 “유예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입하였거”를 “도입했거”로, “정부지원에 의하여”를 “정부지원을 받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범칙어선”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유자에 대하여”를 “소유자에게”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이수하였다”를 “이수했다”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 하며”를 “발급해야 하며”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발급하여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를 “적어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하여”를 “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각각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송부하여”를 “보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각각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만”을 “경우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받은 경우에는”을 “받으면”으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를 “경우만 허가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해당된다”를 각각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신고 또는”을 “변경신고를 받거나”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지출예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이하여야”를 “협이하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접하는”을 “연접(連接)하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 중 “공적장부”를 “공적장부(公的帳簿)”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야”로 한다.

제27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하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하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송부한”을 “보낸”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어업허가대장 기재사항)”을 “(어업허가대장 기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록하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하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하야”로 한다.

제31조 중 “부여하여야”를 “부여하야”로 한다.

제34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하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근해어업 :”을 “연근해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어업 :”을 “어업:”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하야”로 한다.

제41조의4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을 “규모등이 적합한지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7 제3호 중 “타인으로 하여금”을 “타인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중 “조업하여서는 아니”를 “조업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본문 중 “조업하여야”를 “조업해야”로 하며, 같은 2) 단서 중 “조업하여서는 아니”를 “조업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라목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조업하여서는 아니”를 “조업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조업하여서는 아니”를 “조업해서는 안”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1)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같은 1) 및 2) 중 “조업하여서는 아니”를 각각 “조업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표기하여야”를 각각 “표기해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방류하여야”를 “방류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조업하여서는 아니”를 “조업해서는 안”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근해형망어업

1) 어구(부도1 참조)

영 별표 1의2 Ⅱ 제20호에도 불구하고 고정틀 밑면에 부착되는 자루그물을 고정틀로부터 12미터(발줄길이 30미터) 이내로 이격하여 12. 1부터 다음 해 5. 31까지는 3개 이내의 체인을, 9. 1부터 11. 31까지는 2개 이내의 체인이 부착되어 있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1과 같다. 다만, 해당 어구는 패류를 포획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패류 외 어종은 항차당 총 어획량(어획물 총중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3퍼센트 이내로 혼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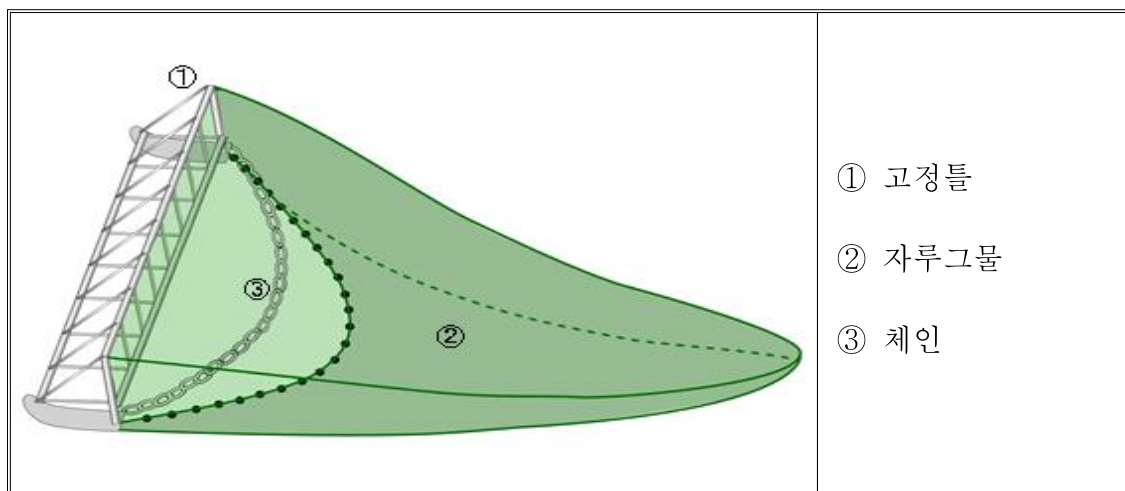
2) 사용시기

1)의 어구는 6. 1부터 8. 31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부도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도1]

근해형망 어구 겨냥도



별표 10 제2호주) 중 “(부도”를 각각 “(부도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와 규모, 설비 등 근해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u>입어</u> 가 허용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u>아니한다</u> .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 ----- ----- -----. ----- ----- ----- ----- <u>입어(入漁)</u> ----- ----- ----- <u>않는다.</u>
②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u>정수</u> 및 부속선 등 연안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u>아니한다</u> .	② ----- ----- <u>정수(定數)</u> ----- -----. ----- ----- ----- <u>않는다.</u>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 ----- -----

[illegible]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라.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 _____

_____ 않는다.

1. -----

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 : 어선

2. 삭 제

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어업허가 신청기관)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 신청
해야 ----.

1. -----
-----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어업허가 신청기관) ① ---

----- 제출해야 ---

1. -----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
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
쳐 제출할 수 있다.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허가신
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
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같은 것으로 본다.

3.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
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
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
출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
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

제출해야 -----.

2. -----

-- 위치해야 -----.

3. -----

않게 -----

4. -----

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어업

가. (생 략)

나. 첨부서류

1) 근해어업·연안어업의 경우

가) (생 략)

나)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

----- 제출해야 --
--.

----- 제출해
야 ----.

제6조(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이수했다---

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
아야 하는 사람만 해
당한다)

다) (생 략)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 다) (생 략)

라) 법 제41조제6항에 따
른 교육을 이수하였다
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
아야 하는 사람만 해
당한다)

마)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
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다)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이수했다 ---

마) (현행과 같음)

② ----- 제
출 시 -----

1. -----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삭 제

3. (생 략)

③ 허가권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2항제3호의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어 허가신청서와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는 그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후 어업허가신청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허가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5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제7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

경우만 해당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만 해당한다 -----

보내 -----

----- 보내야 -----.

④ -----

----- 받으려면 -----

----- 제출해야 -----.

제7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협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생략)

3.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 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4.·5.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7조의2(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의 확인은 어선

등) ① -----

----- 적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첨부해야 -----.

1. ----- 제3호에 따른 사항-----

2. (현행과 같음)

3. ----- 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산 조정위원회-----

4.·5. (현행과 같음)

③ -----

----- 검토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출항한 후 조업을 마치고 입
항한 차수별로 포획·채취된 어
획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의3(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
인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
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시
어업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
다.

제7조의4(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
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대

----- 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3(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
인 등) ① -----

----- 받으려면 ---

----- 제출해야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고해야 -----
--.

제7조의4(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
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자
가 속한 어업자단체가 「수산자
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
자협약을 체결하여 한시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속
한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어업자에게 제14조제1
항제4호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
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받은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 선정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발급해야 -----.

④ -----
----- 했거나 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 ----- 통
보해야 ----- . <후단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⑤ -----

전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조업기간 및 포획대상 어종별 어획할당량 등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4항, 법 제61조제1항제3호,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 제출해야 -----.

--- 발급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⑥ -----

----- 인정하는 -----

----- 발급해야 -----.

제8조(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61조제1항제3호 및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영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 신청해야 -----.

③ -----

-- 받으려면 -----

신청해야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신청해야 -----.

⑥ -----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다목의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⑦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8조의2(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등의 기준

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였을 것

나.·다. (생략)

2. (생략)

통지해야 ----. ----

----- 해야 ----
-----.

⑦ -----

----- 시작일-----

-----.

제8조의2(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 않
았-----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①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검사증서 사본에 어선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않은 -----

----- 발
급해야 ----.

제9조(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① -----

-- 인정하면 -----

-----.

② 대조해
야 .
않아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

② _____

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 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갱신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갱신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 필요한 ---

--- 유예해야 ---.

③

----- 유예해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업을 폐업한 자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저장권자로부터 저장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허가의 유예기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 경우는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 않는 -----

④ -----

----- 경락대금(競落代金) -----

----- 유예해야 -----
----. ---- 경락인(競落人) ----

-----.

⑤ -----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
증을 첨부하여 해당 어선에 대
한 어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
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
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제11조(어업허가의 제한)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유예해야
-----.

-----.

⑥ -----

유예해야 ----.

제11조(어업허가의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접 그 해당 여
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
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
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
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
청한 경우.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
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손실보상
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
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
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 해서는 안 -----
----. -----

----- 확인해야 -----.

1. -----

-----.

----- 경우는 제외한
다.

2. -----

-----.

----- 경우는 제외한다.

3. -----
----- 도입했거-----
----- 정부지원을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같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삭 제

6.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어구·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7. ~ 9. (생략)

- ③ 저장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법 제49조제1항에서

받아 -----

4. -----

않는 -----

----- 새로 -----

6. -----

-- 수산관계법령 위반-----

7. ~ 9. (현행과 같음)

- ③ -----

준용하는 법 제35조제4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7 제3호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허가권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업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

----- 소유자에게

----- 않는
----- 다.

④ -----

----- 해서는 안 -----
-----.

⑤ -----

----- 보내야 -----.

제12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① -----

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2조의2(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과 어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1조 및 제42

----- 허가해야 -----.

1.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수했다-----
----- 발급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

-----.

인정하면 -----
-----.

제14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

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허가권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어선비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선명·톤수와 기관의 마력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그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해당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허가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어업의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한

----- 발급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해야 하며 -----

----- 적고 -----

----- 발급해야 한다.

③ -----

----- 적어 발급해야 -----
-----.

후 다른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
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
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
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일까지로 하며, 같은 어선에 추
가로 허가를 한 경우에는 종전
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
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⑤ 어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
하도록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의 어업허
가증 발급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
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
지사, 「어선법」에 따른 어선

보내 -----

----- 발급해야 --

④ -----

----- 발급해야 -----
--.

⑤ -----

----- 보내 --

-----.

⑥ -----

등록관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 3. (생략)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생략)
 6.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 10.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 통
보해야 ----.

제1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

변경하려면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경우만 해당한다-----
--
 5. (현행과 같음)
 6. ----- 경우만 해당한다--
 7. ----- 경우만 해당한다--
 8. ~ 10. (현행과 같음)
- ② -----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
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
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
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③ (생 략)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
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접수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어업
허가증에 기재한 후 제14조제5
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
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

--- 제출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3. -----

----- 경우만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발급해야 -----.

⑤ -----

----- 적은 -----

----- 통보해

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어업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

야 ----.

⑥ -----

-- 받으면 -----

경우만 허가해야 -----.

제19조(어업허가증의 재발급) --

----- 제출해야
-----.

제20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 신고해야 -----.

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

1. ~ 3. (생략)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 (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등에 그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어업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당한다-----
--

5. -----

----- 해당한다-----
--

② -----

----- 확인해야 -----.

③ ----- 변경신고를 받거나 -----

----- 적은 -----

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사람에게 의한 지배의 한계)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제23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3. (생략)

4.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5.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 통지해야 ----.

제22조(다른 사람에게 의한 지배의 한계) -----

----- 사람에
게 -----

해서는 안 -----.

1. 2.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

-----.

2. 3. (현행과 같음)

4. -----
-- 수입지출예산서-----

5. ~ 8. (현행과 같음)

②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
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험
어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매 분기
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제24조(연구어업·교습어업의 실

-----.

-----.

1. -----
경우만 해당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

----- 통지
해야 ----.

④ -----

---- 첨부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⑤ -----

----- 관리해야 ----
--.

제24조(연구어업·교습어업의 실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25조(신고어업의 신고)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실정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시) -----

-- 협의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신고어업의 신고) ①

제출해야.

연접(連接)하는

있다.

②·③ (생략)

제25조의2(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어업신고
가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47조제8항제1호의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
부터 1년

2. (생략)

제26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
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
고 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
를 한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신고어업의 제한) ----

-----.

1. -----

-- 공적장부(公的帳簿)-----

2. (현행과 같음)

제26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

----- 제출해야 -----.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어업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어업폐업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어업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

제27조(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 제출해야 -----
-----.

제28조(어업폐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통지해야 -----.

-----.

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어업허가대장 기재사항)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30조(공익상 어업의 제한 등에

제출해야 .

해야

⑥

보낸

제29조(어업허가대장 기록사항) -

----- 기록해야

-----.

1. ~ 6. (현행과 같음)

제30조(공익상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①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영 제30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19조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허가의 조건 및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2. (생략)

3.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어업 신고증명서의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관한 기준·절차 등) ① -----

----- 고려해

야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 해야 -----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의 회수를 <u>하여야</u>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 ----- ----- ----- -- <u>해야</u> ----- -----
제31조(어업허가 등의 번호)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번호를 <u>부여하여야</u> 한다.	제31조(어업허가 등의 번호) ---- ----- ----- ----- <u>부여해야</u> ----.
제34조(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 ----- ----- ----- ----- ----- ----- ----- ----- <u>제출해야</u> -----.
제41조(보고) 시·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처분 및 신고수리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제41조(보고) ----- ----- ----- -----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근해어업 : 별지 제36호서
식

2. 연근해어업 외의 어업 : 별지
제37호서식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5년마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
가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48조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
는 법 제30조·제31조·제32조
에 관한 사항의 실태를 조사하
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1조의4(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64조의3제1항
에 따라 어구의 규모·형태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
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 확
인을 요청하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는 별지 제
38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
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한 어구의 규모등의

보고해야 ----.

1. 연근해어업: -----
--

2. ----- 어업: -----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① ----

----- 조사해
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
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30일 이내에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
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작성
한 후 허가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
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
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제출해야 ----.

② -----

---- 규모등이 적합한지를 ---
----- 통보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발급해야 --
----.

⑤ -----

----- 첨부해야 --
----.

제42조(규제의 재검토) -----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1. ~ 4. (생략)	----- ----- ----- ----- ----- ----- <u>해야</u> ----- -----. 1. ~ 4. (현행과 같음)
---	---